

“변화를 선도하는 강남,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”

등록번호	세무2과-36209
등록일자	2015.10.20.
결재일자	2015.10.21.
공개구분	부분공개

주무관	지방소득세5팀장	세무2과장	기획경제국장		
송민혁	표지영	김광수	10/21 김용운		
협조자					

개인지방소득세 이중과세 관리시스템 자체개발 관련

이중과세에 의한 체납 5억 정비보고

□ 추진배경

- 납부기한내 미납자에 대해 수시분으로 일괄등록한 후 납세자가 수기분 또는 신고분으로 추후 납부한 것에 대해 세무서 수시분이 체납 방치되는 사례 발생

□ 추진사항

- 추진현황 : 최근 5년간 개인지방소득세 체납분(2010년~2015년)
(단위: 건/백만원)

세목구분	체납		부과취소대상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
총 합 계	8,504	61,587	45	484
종합소득세분	6,169	35,593	29	471
양도소득세분	2,335	25,994	16	13

□ 추진효과

- 이중부과 찾기 프로그램 자체개발로 내실있고 지속적인 체납관리 강화
- 현년도 체납발생 최소화로 세입목표 달성 및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

강 남 구
(세 무 2 과)

【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】

검토분야	확인 및 적시사항																											
관련 규정 및 근거	<p>현행 관련 법, 시행령, 조례, 규칙,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p>·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추진 경위	<p>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?</p> <p>· 추진경위 : 2015년 『고액 체납자 집중관리로 세입확충』 주요업무 추진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
예산 사항	<p>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?</p> <p>· 비예산 사항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
수혜자 및 범위	<p>이 업무(사업)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?</p> <p>· 세입확충에 따른 안정적 재정운영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
분야별 검토사항 (계속 :) (신규 :)	<p>이 업무(사업)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?</p> 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60%;">① 관련부서 협조</td> <td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width: 20%; 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② 이해관계인 및 예되는 민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④ 미래행정 수요예측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⑤ 시장조사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tr> <td>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-----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)</td> </tr> </table> <p>·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,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</p>	① 관련부서 협조	-----	()	② 이해관계인 및 예되는 민원	-----	()	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	-----	()	④ 미래행정 수요예측	-----	()	⑤ 시장조사	-----	()	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	-----	()	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	-----	()	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	-----	()	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	-----	()
① 관련부서 협조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 이해관계인 및 예되는 민원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④ 미래행정 수요예측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⑤ 시장조사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⑥ 민간부분(시설 등)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	-----	()																										
타 기관 사례	<p>타 구 사례를 파악, 비교해 보았습니까?</p> <p>· 해당사항 없음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전문가 자문	<p>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?</p> <p>· 해당사항 없음</p>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이중과세에 의한 체납 5억 정비보고

개인지방소득세 세무서 수시분으로 과세등록된 자료중 납세자가 수기분 또는 신고분으로 납부한 일부 자료가 체납되어 있어 “이중부과 찾기 프로그램”을 개발하여 불필요한 민원발생 예방과 체납정리에 크게 기여함

I 추진배경

- 현년도 고액 체납 최소화 추진계획(세무2과-35641,2015.10.16.)**
- 지방세법 부칙 제13조 [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등에 관한 특례]** <2014.1.1. 법률제12153호>
 - 2016년12월31일까지 세무서 경정·결정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수시부과결정에 관한 업무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행함
- 세무서 수시분 과세등록 ⇒ 납세자가 납기후 신고분으로 납부 ⇒ 수시분 체납발생**
 - 납부기한내 미납자에 대해 수시분으로 일괄등록한 후 납세자가 수기분 또는 신고분으로 추후 납부한 것에 대해 세무서 수시분이 체납으로 방치사례 발생

II 추진사항

- 추진현황 : 최근 5년간 개인지방소득세 체납분(2010년~2015년)**
(단위: 건/백만원)

세목구분	체납		부과취소대상	
	건수	금액	건수	금액
총 합 계	8,504	61,587	45	484
종합소득세분	6,169	35,593	29	471
양도소득세분	2,335	25,994	16	13

- “이중부과 찾기” 프로그램 자체개발 ⇨ 체납분중 부과취소 대상 자동발체**
 - 엑셀 VBA기능을 활용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체납내역과 총괄과세내역을 1·2·3차비교분석 명령을 실행하여 세무서 수시분 체납중 납세자 신고납부분 자료 자동발체

III 추진효과

- 이중부과 찾기 프로그램 자체개발로 내실있고 지속적인 체납관리 강화**
- 현년도 체납발생 최소화로 세입목표 달성 및 조세정의 실현**